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5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원중, 김지향,
김춘곤, 남창진, 문성호,
박 석,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아이수루, 이영실,
이종배, 이효원, 황유정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급 근거에 대해 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쁨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 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 을 지급할 수 있다.</u>

문서번호

20220817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2.08.17.

회신일 : 2022.08.22.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3항의 이용권 등 지원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합리적, 경제적 추계는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통합 문화이용권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수혜대상에 저소득 청년층이 포함된 약 30만명에 대하여 지원중 임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
소계	49,689,048
○ 문화누리카드 발급비	45,050,700
○ 인건비	78,078
○ 운영경비	55,200
○ 문화누리카드 발급비	4,505,070

- 조례안 제16조제3항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문화이용권의 적극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서울시 청년층을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상 2022.7현재 통계청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상 청년인구는 2,244,293명이며, 연간 10만원(서울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준)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최근 4개년 평균 수혜율 83.25%(문화정책과 내부 추산자료)을 적용하면, 연간 1,86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예산의 제약으로 지급대상의 한정이 불가피한데, 법상 청년 연령의 포함 범위(아래 ※ 이하 상술), 수혜대상에 중·상위소득 계층 청년의 포함여부, 취업 및 미취업 여부 등

따라 수혜액이 다르며, 이 과정에서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물론 수혜자인 청년 개개인의 문화활동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실제 혜택액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정책적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경제적·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분석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